비과세종합저축 거래설명서

-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 -

※ [주의]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,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I. 핵심(요약)설명서

▷ 이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(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)

□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구 분	주요 내용
비과세종합저축	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 금융기관 합산 5,000만원 한도로 저축가능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입니다.
연금저축	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, 저율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세액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.

□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▶ 발생가능한 불이익

- 국세청 통보에 의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, 세제혜택 소멸 및 세제혜택을 추징하고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.

▶ 투자위험등급 : 2 등급 [높은위험]

-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**투자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**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며, 본 상품은 2등급(높은위험)에 해당합니다.

이 상품은 최대 투자원금 전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
투자자 성향		공격투자형	적극투자형		위험중립형	안정추구형	안정형
투자위험	위험등급 1등급	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등급	위험도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
유동성위험	중도매도(환매불가) []	중도매도(환매)시 비용발생 []	중도매도(환매)가능 [〇]
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▶ 유의사항

-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 인당 5,000 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-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되나, 편입한 금융투자상품별 보수(판매보수 등)는 별도로 부과됩니다.

□ 민원, 상담연락처

•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(1544-5000), 인터넷 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고객의소리(이용안내>소비자보호광장>민원창구>고객의소리)와 본사 민원 담당부서(02-3276-4334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Ⅱ. 비과세종합저축 거래설명서

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분류하고 있으며, 본 상품은 2등급(높은위험)에 해당합니다.

이 설명서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, 자세한 설명은 증권저축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·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비과세종합저축 상품 설명

가. 가입대상

- ① 만65세 이상 거주자
-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
-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-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⑦ 5-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-18민주화운동부상자

나. 가입한도

-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.

(기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와 합산관리)

다. 세제혜택 :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.

라. 소득요건

-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.

마. 저축가능상품 및 저축방법

▶ 저축가능상품 : 주식, 채권(장내/장외), ELS/DLS/ELB/DLB, 원화RP

▶ 저축방법 : 임의식

바. 저축기간 : 제한 없음.

사. 주요내용

업무구분	비과세종합저축		
입금	수시입금가능		
출금	수시출금가능		

입고		불가
	현물	
출고	당사이체	불가
	타사이체	
청약	공모주	불가
öÄ	ELS/DLS/ELB/DLB	가능

2. 투자위험 및 유의사항

-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**예수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**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. 특히 투자주의종목, 투자경고종목, 투자위험종목 및 관리종목은 상품위험등급이 1 등급(매우높은위험) 상품입니다. 해당 상품들은 투자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이 발생 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,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국세청 통보에 의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, 세제혜택 소멸 및 세제혜택을 추징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.

Ⅲ.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

-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되나, 편입 금융상품별 보수(판매보수 등)는 별도로 부과됩니다.
- 매매 관련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>이용안내>업무이용안내>수수료 안내)

IV. 기타유의사항

■ 자료열람요구권 안내

행사요건	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제 28 조에
	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.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	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, 범위,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
-1 - ~ -1	있으며.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 년(일부
자료열람	자료는 5년)동안 보관합니다.
	단,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, 제한
	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■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

- (행사요건)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o (대상 금융상품)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

- (해지요구 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)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
- (해지절차)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(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)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.

■ 청약철회권

○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상품이 아닙니다.

단사	미워처리	전차 및	신청방법	OFLH
\sim \sim		371 +		

민원신청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□
<td

*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(민원)이 있는 경우,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접수처	접수방법	비고
전자민원접수	홈페이지(<u>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</u>)	고객센터>고객의 소리
영업점민원창구	서면(민원신청서)	-
본사 민원담당부서	이메일(<u>minwon@koreainvestment.com)</u> , 우편, FAX(02-3276-4332)	소비자지원부 (02-3276-4334)

■ 외부기관(금융감독원 등)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

분쟁조정 신청	₽	사실조사	⇔	조정안 제시	⇔	양 당사자 수용 여부 결정	↔	수용 시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*
---------	---	------	---	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*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

접수처	연락처	바로가기(인터넷)
금융투자협회	02-2003-9426	(http://www.kofia.or.kr/wpge/m_77/sub040102.do)
한국거래소	02-1577-2172	(http://sims.krx.co.kr/p/Drct0201/)
금융감독원	1332	e-금융민원센터 링크(www.fcsckr)(PC)

끝.

판매직원	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	한 내용과 이 설명	서의 내용이 동일현	학을 확인합니다.	
확인사항	한국투자증권	지점 (☎) 직위:	직원명 :	(서명)